



Web Contents



2021년 09월 28일 04시 56분

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

긴급복지지원제도

위기가구사례관리

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

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함

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

✓ 급여신청

-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(민간복지사등 저소득가구 보장외 가능)
- 구비서류 : 급여신청서,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임대차계약서, 기타요구서류

✓ 조사

-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
-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, 금융재산 조회 실시
-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,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
-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, 장애유무,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

✓ 급여결정

-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
- 결정내용 통지 (전자우편, SMS, 서면)
-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

✓ 급여실시

-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
- 급여의 종류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, 의료급여
-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,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

✓ 확인조사

-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
-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

-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, 급여변경, 급여중지 등 결정

✔ 보장중지

-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
-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

✔ 소득인정액 기준

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

✔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

(단위 : 원)

가구규모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기준중위소득	1,707,008	2,906,528	3,760,032	4,613,536	5,467,040	6,320,544	7,174,048
생계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30% 이하)	512,102	871,958	1,128,010	1,384,061	1,640,112	1,896,163	2,152,214
의료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40% 이하)	682,803	1,162,611	1,504,013	1,845,414	2,186,816	2,528,218	2,869,619
주거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44% 이하)	751,084	1,278,872	1,654,414	2,029,956	2,405,498	2,781,039	3,156,580
교육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	853,504	1,453,264	1,880,016	2,306,768	2,733,520	3,160,272	3,587,024

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

- 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- 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
- 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

✔ 부양의무자 기준

-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
- 부양의무자의 범위 -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(부모, 아들·딸 등) 및 그 배우자(며느리·사위 등)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및 급여

✔ 조사

일반원칙

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 된 사항을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, 보장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함

조사내용

- 부양의무자 유무,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
-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(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기타소득, 보장기관 확인소득)
-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(일반재산, 금융재산, 승용차)
- 소득환산율 적용
- 수급권자의 근로능력, 취업상태, 자활육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
-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,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

조사방법

-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
- 금융재산조사 :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실시결과 적용
- 실태조사 :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관리망)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등 추가조사

자료제출요구

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·방해·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

✓ 급여

- 급여원칙 : 최저생활보장, 보충급여, 자립지원, 개별성, 가족부양 우선, 타급여 우선의 원칙
- 급여종류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자활급여, 교육급여, 해산급여, 장제급여

✓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감면제도

주민세 비과세, TV수신료 면제,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,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, 복지전화서비스, 전화기본요금 감면(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제외), 전기요금 할인, 의료급여1종수급자 종량제폐기물 쓰레기봉투 지급 등

MokPo - Si ***Web Contents***

